

■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[별지 제6호서식] <개정 2023. 5. 25.>

행정기관명

수신자 귀하()

제 목 종합검사명령

귀하의 자동차는 종합검사기간이 지나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하였으나 계속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7조 및 「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오니 아래 ⑨란의 명령 이행기간 내에 가까운 자동차검사소(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)에서 종합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소 유 자	① 성명(상호)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주 소	(전화번호:)
자 동 차	④ 등 록 번 호	⑤ 차 대 번 호
	⑥ 차 명	⑦ 차 종
	⑧ 종합검사기간	부터 까지
⑨ 명 령 이 행 기 간		부터 까지
※ 유의사항 1. 이 명령서를 받고도 명령 이행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「자동차관리법」 제81조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2. 이 명령서를 받고도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7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. 3. 이 명령서를 받기 전에 종합검사를 받았거나 전출·이전·말소 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·도에 전화,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		
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직인

기안자(직위/직급) 서명 검토자(직위/직급) 서명 결재권자(직위/직급) 서명

협조자(직위/직급) 서명

시행 처리과명-일련번호(시행일자)

우편번호

주소

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)

/홈페이지 주소

전화() 팩스() /공무원의 공식전자우편주소/공개구분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